# 동아리연합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아리 연합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제1항 본회는 전 동아리인의 힘을 모아 자율적인 학생 자치 활동 보장과 건전하고 건강한 대학문화와 자주적인 민족문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항 본회는 전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인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동아리인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단, 휴학생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하며 준회원의 활동으로 인정한다. 1 학년은 1 학기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는 경우 본회의 이름으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저항 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4항 본회의 회의 개최 시 불참한 자는 그 권리를 각 회의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조직)

제1항 본회의 제 2 조 1, 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총회, 대표자회의, 회장단, 운영위원회 및 집행 부서와 각 분과로 구성한다.

제2항 회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의결 정족수)

제1항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특별의결 정족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호 회칙 개정안과 집행부 탄핵안, 동아리 징계안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호 회장단, 분과장 탄핵안. 동아리 징계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가부 동수인 경우는 본회 회장의 재량에 따르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장 기관

## 제1절 동아리 연합회 총회

제7조 (구성) 본회 총회(이하 총회)는 등록된 동아리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의결권은 사전 등록된 총대에게만 있다. 총대는 한 동아리 당 4 명으로 사전 보고 된 사람과 집행부 임원으로 하고 선거인단을 겸한다. (단, 집행부 임원 및 기구 임원과 동아리 대표가 겸직일 경우 한쪽은 자동 포기된다.)

**제8조** (지위 및 권한) 본 총회는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인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며 회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제9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 **제10조** (소집)

제1항 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동아리인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선거가 있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총회는 1 주일 전에 공고 되어야 한다. 단 선거는 2 주일 전에 공고 되어야 한다. 긴급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 **제11조** (의결)

제1항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총회가 무산되면 대표자회의에 의결을 회부할 수 있다.

#### 제 2 절 동아리 대표자회의

#### **제12조** (구성)

제1항 대표자회의는 회장단, 집행부, 분과장, 각 동아리 대표로 구성된다. (분과장은 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으나, 회장단과 집행부는 겸직할 수 없다.)

제2항 각 동아리 대표자는 각 동아리의 회장이나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은 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재 시 동아리 내에서 대리인을 선출하여 회의에 참여한다.

제3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전보고 하에 참관할 수 있으나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제13조 (지위)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중추적 심의, 의결 기구이다.

## 제14조 (권한)

제1항 본회는 각 분과와 집행부의 사업계획 심의, 확정권을 갖는다.

제2항 본회는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 확정권을 갖는다.

제3항 본회는 신규 동아리 등록, 등록 취소 및 동아리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4항 본회는 총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제5항 본회는 본회의 회장단, 운영위, 집행부 탄핵권을 갖는다.

제6항 본회는 예·결산 심의, 확정권을 갖는다.

제7항 본회는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제15조** (소집)

제1항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매 학기 1 회 이상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공고는 일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2항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요구 및 중대 문제 발생 시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 한다.

**제16조** (개회) 개회 정족수는 등록 동아리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집행부나 회장단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3 절 회장단

제17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지위와 역할)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동아리인의 모든 자율적인 사업을 주관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하며, 회장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한다.

**제19조** (임기 및 선출) 당해 12 월 1 일부터 다음해 11 월 30 일까지로 하며, 선출은 총회를 통한 총대 직접선거로 한다.

## 제20조 (권한)

제1항 회장은 총학생회 운영위원에 참석한다.

제2항 총회의 소집 요구권.

제3항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권.

제4항 동아리 대표자회의 소집 결정권.

제5항 집행부장, 특별기구 의장 임명권 및 해임권.

제6항 특별기구 설치, 집행부 신설권 및 특별기구 해산권.

제7항 징계 발의권.

제8항 예산 집행의 승인권.

제9항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10항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제반 의결사항을 실무 처리한다.

제11항 집행부 모임 참여권.

제12항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발의권.

## 제 4 절 집행부

제21조 (지위)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2조** (구성 및 임기) 동아리 연합회장, 부회장, 각 국 국장으로 구성되며, 각 국은 회장의 임의로 개편된다. 임기는 회장단과 동일하다. 단 구성된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활동한다.

제23조 (선임 및 자격) 회장이 임명한다

## 제 5 절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

제24조 (지위) 본회의 사무집행에 관한 최고 심의 기구이다. 단, 회칙 규정에 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구성) 각 분과장과 집행부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회장단과 동일하다.

#### **제26조** (임무 및 권한)

제1항 본회의 사업 계획안 심의권.

제2항 집행부서 및 분과원의 신설 통폐합을 대표자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제3항 회칙 개정안의 발의 동의권.

제4항 등록 취소 동아리를 대표자회의에 회부.

제5항 회장단 권위 시 그 직을 계승.

제6항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제7항 동아리에 대한 경고 징계 의결권 및 제명 징계 회부권.

제8항 특별 위원회 설치 동의권.

제9항 동아리에 대한 예산 분배와 감사권.

## 제27조 (소집)

제1항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임시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 제 6 절 분과회의.

**제28조** (목적) 각 분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계획 추진하여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하며, 분과내의 통합력 재고를 기한다.

#### 제29조 (구성)

제1항 본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학술, 선교 제일, 선교 제이, 문화 등 4개 분과를 둔다. 제2항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장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제30조** (분과 구분 기준)

제1항 학술은 신학, 철학, 역사, 어학 등에 관한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 한다.

제2항 선교 제일은 성경 공부와 교제, 학원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 한다.

제3항 선교 제이는 특수 사역과 예술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 한다

제4항 문화분과는 문화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 한다.

제5항 분과 구분도는 동아리 연합회 조직표를 참고로 한다.

#### 제31조 (분과의장)

제1항 선출방식: 대표자회의 시 분과 별로 모여 선출한다. 제2항 분과를 대표하여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이 된다.

#### 제3항 권한:

1호 분과회의 소집권.

2호 분과의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을 심의 결정하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분과내 집행부를 둘 수 있다.

3호 분과회의의 동의를 거쳐 분과내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제32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본회의 행사를 보고 토의하며, 분과내 특성에 맞게 분담하여 실시한다.

제2항 분과의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을 심의한다.

제3항 각 분과에 속한 동아리의 제반 활동을 심의한다.

## 제7절 특별 위원회

#### **제33조** (설치, 운영 및 해소)

제1항 제 5조 2항에 의해 회장이 설치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제3항 특별위원회 재정은 본회가 충당한다.

제4항 제 20 조 6항에 의해 회장이 해소한다.

## 제3장 재정

제34조 (수입) 재정은 총학생회비, 지원금, 기타 수익금, 동아리 등록금으로 한다.

## 제35조 (회계 연도)

제1항 본회의 회계 연도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2항 회계 연도는 2기로 나누되 각 기별로 예산과 결산을 편성한다.

##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제1항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동아리는 예산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접수는 학기당 1회에 걸쳐서 실시한다.

제2항 본회의 예산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집행 한다.

제3항 각 동아리의 예산 신청안은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4항 예산집행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 (해당 없음)

## 제38조 (예산 집행)

제1항 예산 심의로 편성된 내용을 회장이 집행한다.

제2항 예비비는 동아리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집행한다.

## 제4장 등록

## 제1절 재등록

## 제39조 (등록 요건)

제1항 2개 과 이상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회원명부 1부(1인 당 동아리는 두 곳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1 학년 1 학기 회원은 정회원으로 받을 수 없다.), 소정의 등록비, 지도교수 서명(신규 등록의 경우 17인 이상의 회원명부 1부)

제2항 전년도 활동 보고서와 결산안,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와 예산안(3월과 9월 두 번 실시)

## **제40조** (등록절차)

제1항 매학기 1회 등록 서류를 동아리 연합회에 제출한다.

제2항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는 이를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이 미비한 동아리는 경고 징계를 결의한다.

제3항 미등록 동아리에 대해서는 재등록 공고를 하며 2 차에서도 미등록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 제명 발의한다.

## **제41조** (등록 취소)

제1항 재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2항 징계 결정에 의해 제명된 동아리

#### 제42조 (등록 기간)

제1항 등록 기간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2항 등록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제 2 절 신규등록

제43조 (등록 요건) 제 39조와 동일하며, 설립 목적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등록 기간) 제 42 조와 동일하다.

## **제45조** (등록 절차)

제1항 등록 요건을 갖춘 동아리는 전체 대표자 1/3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항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는 이를 검토한다.

제3항 대표자회의에서 신규 동아리 등록을 최종 결정한다.

## **제46조** (심의 기준)

제1항 본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야 하며 본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2항 활동 내용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3항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와 설립목적, 설립취지가 같거나 유사시 등록할 수 없다.

제4항 소비, 퇴폐, 외래, 저질 문화 유포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제47조** (신규 동아리의 권한) 타 동아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단 등록을 인정받은 후 1 학기 동안 예산 및 공간 사용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제5장 선거

#### **제48조** (선거권)

제1항 본회의 선거는 등록된 선거인단으로 한다.

제2항 본회 정, 부회장 선거인단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과 집행부 및 동아리당 4 명으로 구성된 총대들로 한다.

제3항 분과장은 대표자회의 시 선출한다.

제4항 선거인단은 선거 공고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제49조 (피선거권)

제1항 회장, 부회장

1호 회장, 부회장은 3 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중인 자로 소속 동아리 회장이 인정하는 동아리 회원으로 한다.

2호 회장단은 2인 1조가 되어 출마하며, 소견문을 써서 동아리 대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분과장: 2 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인 자로 소속 동아리 회장이어야 한다.

## **제50조** (선거 절차)

제1항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선거 일정 기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선거는 매년 11월 말에 실시한다.

제3항 선거일은 최소한 2주 전에 공고한다.

제4항 단독 출마 시는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며, 일반 정족수에 의거한다.

#### 제51조 (당선)

제1항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와 총투표자수의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하며,1회에 한하여 재투표할 수 있다.

제2항 재투표 결과 과반수 미달일 경우 다수 득표자가 된다.

#### 제52조 (선거 관리 위원회)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임명한다. 제2항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이 출마 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선거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선거일로부터 2 주전에 공고한다.

#### 제4항 임무 및 권한:

1호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2호 선거인단 명부 작성 및 공고.

- 3호 선거홍보 유인물 및 벽보작성.
- 4호 선거운동의 방법 빛 임시의 조정.
- 5호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 6호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자 결정.
- 7호 재선거 여부 결정.
- 8호 선거일정 공고.
- 9호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 제6장 징계

**제53조** (징계) 본회의 목적과 집행에 위배된 동아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54조 (징계대상)

## 제1항 경고

- 1호 대표자회의에 학기 당 2회 불참한 동아리.
- 2호 분과회의에 연속 3회이상 불참한 동아리.
- 3호 동아리 활동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 4호 예산 집행이 행해진 동아리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단. 집행 안된 예산을 반환하면 징계되지 않는다.)
- 5호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 6호 기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특별 사안.

#### 제2항 제명

- 1호 2 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 2호 경고 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3호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활동을 계속할 경우.

## **제55조** (징계절차)

제1항 경고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동아리 출석 하에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2항 제명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동아리 출석 하에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제3항 해당 동아리의 미 출석 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하에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제56조** (징계 결정)

제1항 경고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항 제명은 대표자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제57조** (징계효력)

제1항 징계는 대표자회의 결정 이후 회장이 즉각 공포하고 시행한다.

제2항 경고: 해당 학기 예산 분배권이 없다.

제3항 제명: 동아리 등록을 취소하고 공간을 박탈한다.

제58조 (경고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경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동아리는 서면으로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회장은 즉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특별 의결에 의거 의결한다. 재결의 실패 시 해당 동아리의 징계는 효력을 상실한다.

## 제7장 회칙 개정

제59조 (회칙 개정 발의)

제1항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발의한다.

제2항 전체 동아리 회장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회장이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60조 (의결) 대표자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장 부칙

제1조 본 회칙 및 시행세칙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는 회칙의 미비사항을 보완을 위해 대표자회의 의결로 각종 시행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예) 등록에 관한 시행 세칙, 예산 분배 및 감사에 관한 시행 세칙.

#### 제3조

제1항 본 회칙 및 시행세칙은 2001 년 5월 1일 개정되었으며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본 회칙 및 시행세칙은 2002 년 9월 19일 개정되었으며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항 본 회칙 및 시행세칙은 2013 년 4월 1일 개정되었으며 2013 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등록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1항 2 개과 이상으로 된 10 인 이상의 회원명부 1 부. (단 동아리 중복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등록 시 17 인 이상의 회원명부 1 부.)

제2항 동아리 회칙 1부. (신규동아리만 제출한다.)

제3항 등록할 동아리원을 양식에 따라 제출.(양식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준비한다.)

제4항 소정의 등록비.

제5항 전 학기 활동 보고서와 결산안, 해당 학기 활동 계획서와 예산안을 양식에 따라 기입 하여 제출한다. (양식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준비한다.)

제6항 제 5 항의 서류는 3월과 9월 두 번 제출한다.

제5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회칙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6조 등록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1항 회원수가 부족한 경우 미등록 처리 징계한다.

제2항 중복 동아리 회원은 회원카드가 있는 동아리 회원으로 인정되고 회원카드가 모두 있을 경우 양쪽모두 제외한다.

제3항 회칙은 교내 동아리 회칙만을 인정한다.

제4항 활동 보고서와 결산안,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 징계한다.

제5항 등록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 징계한다.

제6항 신규 동아리는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하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미등록으로 결의한다.

제7조 신규 동아리 등록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

**제8조** 본 시행세칙은 회칙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며, 대표자회의의 일반 정족수에 따라 결의되면 공고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할 때는 5 개 이상 동아리 대표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개정한다.

**제10조** 본 시행세칙은 회칙을 위반할 수 없으며, 효력이 발생한 추후에라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받은 징계도 취소된다.

제11조 본 시행세칙이 결의되면 회장은 3일 이내에 공고해야 된다.

## 예산 분배 및 감사에 관한 시행세칙

#### 제12조 예산 편성 및 심의 확정

제1항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예산 지급을 하지 않는다.

제2항 사업 계획서에는 자세한 예산안이 적혀 있어야 하며 학기당 1,2회 실시한다.

제3항 예산은 징계를 받은 동아리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4항 예산 집행 후에 징계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의 특별 예산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 로 한다.

제5항 예산 집행은 일반 예산과 특별예산으로 한다.

제6항 일반 예산은 학생과 지원금으로, 한 동아리당 15 만원으로 한다.

제7항 특별 예산은 각 동아리 특별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하며, 학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총신을 알리는 사역, 동아리 자체의 특별행사(단 MT, 회식 제외)시 집행하며 해당 동아리 총예산의 10% 이하에서 집행한다.

제8항 특별 예산의 상한선은 일반 예산과의 합이 20 만원으로 한다.

제9항 각 동아리에 대한 예산 집행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이를 학우 전체에 공개한다.

제10항 예산 집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동아리 대표는 타 동아리 2 개 이상의 동 의를 얻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의사안을 대표자회의에 회부한다. 대표자 회의에서 상호 조정의 기회를 갖는다.

## 제13조 예산 집행

제1항 동아리에 분배된 일반 예산은 개 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제2항 특별 예산은 신청 사안 대로 집행 되어야 한다.

제3항 특별 예산을 지급 받고 동아리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경우 동아리 연합회에 학기 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4항 반환할 때는 일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차액을 반환한다.

제5항 만약 동아리 대표가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동연에 보고하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다.

제6항 분과 예산은 해당 분과 동아리 과반수 사업일 때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 제14조 예산에 대한 감사

제1항 예산 분배에 대한 감사권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있다.

제2항 감사는 특별 지원금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3항 감사는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실시한다.

제4항 특별 예산 감사는 영수증과 회계 장부를 서류로써 해당 동아리 회장과 회계가 받는다.

제5항 일반 예산은 감사에서 제외된다.

제6항 특별 예산 감사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업은 감사하지 않는다. (예 동연 동아리의 정기공연이나, 정기 연주회 등 모든 학우가 사업을 한 것으로 분명히 인지할 경우)

제7항 가시적 사업이라도 예산 집행이 도저히 사업 계획서에 못 미칠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결의로 감사할 수 있다.

제8항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감사에 걸린 동아리에 대하여 경고 1회의 징계 발의를 한다.

제9항 경고 1 회 징계 발의 되고 나서 대표자회의 의결 하루 전까지 예산 반환하거나, 집행하면 징계는 철회된다. 이때도 일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차액을 반 환하면 된다.

제10항 경고를 받고도 예산을 반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경고 2회 징계발의된다. 발의되고 반환하거나 집행하면 역시 징계는 철회된다.

제11항 일단 징계 발의되면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제12항 분과장 소속 동아리가 감사의 대상일 경우 분과장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자리를 부 분과장에 위임하고 부 분과장도 감사 대상 동아리일 경우 해당 분과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에서 감사 시간만 제외된다. 집행부 운영위가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제15조** 본 시행세칙은 회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대표자회의 일반 정족수로 결의되고 공고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시행세칙은 회칙을 위반할 수 없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라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받은 징계도 취소된다.

**제17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할 때는 5 개 이상 동아리 대표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또는 동아리연합회회장의 발의로 개정한다.

제18조 본 시행세칙이 결의되면 7일 이내에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동아리 사무실 사용에 관한 시행 세칙

제19조 동아리 사무실 사용 권한

제1항 동아리방은 총신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만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재등록을 마친 동아리는 계속적으로 동아리 방을 사용한다.

제3항 재등록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여서 등록을 하지 못한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사용 할 수 없다.

#### 제20조 동아리 사무실 사용 동아리가 없을 때

제1항 동아리 사무실보다 등록 동아리수가 적을 때 동아리 사무실은 동아리 연합회 소속으로 둔다.

제2항 동아리 사무실은 다른 동아리의 모임을 가질 때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외의 어떠한 이에게도 대여, 양도 할 수 없다.

제3항 빈 동아리 사무실로 옮기고 싶은 동아리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등록을 받는다. (단 재등록 동아리 모두가 동아리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만 적용된다)

## 제21조 동아리 사무실 사용 순서

제1항 재등록 동아리 중에서 동아리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아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2항 3 조 1 항과 같은 사항의 동아리가 많을 때는 기한 내에 먼저 등록한 동아리를 우선으로 배정한다.

제3항 3 조 2 항과 같은 동아리가 많이 있으면 추첨을 원칙으로 하나, 동아리 사무실이 없는 동아리 중에서 분과장 동아리가 있을 때는 분과장 동아리에게 우선권을 준 다.

제4항 3 조 3 항과 같은 동아리가 많을 때는 해당 학기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동아리에게 우선권을 주며, 해당 동아리의 회장 또는 회장에 준하는 부회장이 참여했을 때는 조건으로 한다.

제5항 재등록 동아리 중에서 동아리 사무실을 옮기고 싶은 동아리가 그 다음이다.

제6항 신규동아리가 맨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